

##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

이종영\*

###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쟁점사항
  - 1.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촉진의 필요성
  - 2.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입법
- III. 에너지복지법 입법적 쟁점
  - 1. 에너지복지법의 입법화 배경
  - 2. 주요쟁점사항
- IV. 전기요금의 현실화
  - 1.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 2.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규정의 쟁점사항
- V. 맺는 말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접수일자 : 5월 11일 / 심사일자 : 6월 3일 / 게재확정일자 : 6월 7일

## I. 들어가는 말

에너지법학은 그 동안 우리나라 법학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행정법학의 각론으로서 에너지법론은 행정법교과서에서 일정한 지면상의 할애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행정법교과서는 저자에 따라 다르게 편재되고 있으나 최소한 지금까지 국내에 출판된 행정법교과서에서 에너지법을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우선 대부분의 행정법교과서가 판례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 데에 있다. 에너지법에 관한 판례는 다른 행정법 각론과 비교할 때에 많지 않다. 에너지법이 강학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에너지법이 독자적인 방법론, 원리,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아직까지 에너지법에 어떠한 실정법률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시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에너지법은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에너지법에 대한 새로운 입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입법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의 타결과 함께 우리나라도 협약당사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에너지법은 법학계의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이미 제16대 국회에서부터 있어 왔고, 17대 국회에서도 계속하여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출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18대 국회에 와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법률의 추진은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으며, 이 법은 에너지법의 일부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법학자들에게 기존에 존재하는 에너지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에너지법은 아직 그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크게 에너지안전분야, 에너지수급분야, 에너지사업분야, 에너지환경분야 및 에너지소비자보호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에너지안전분야는 에너지공급시설과 취급용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분야이다. 에너지안전분야에 속

하는 현행 실정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송유관 안전관리법」이 포함된다. 전기용품의 안전을 관장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에너지안전분야에 포함하는 것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동법률은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려된다. 에너지수급분야는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분야로서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수급분야는 독립된 법률로 존재하지 않고, 에너지분야별 사업규제를 통하여 분야별 에너지를 사업자에게 비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에너지수급분야에 속하는 현행 실정법은 「에너지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탄산업법」, 「전기사업법」을 들 수 있다. 에너지사업법분야는 에너지분야에서 경제적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이다. 에너지사업법은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행위규제, 퇴출규제를 통하여 에너지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에너지법의 분야이다. 이에 속하는 실정 법률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석탄산업법」 등을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와 저탄소라는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분야는 에너지환경법분야이다. 에너지환경법분야에 관하여는 환경법분야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법분야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환경법에서 에너지환경분야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에너지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학계가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환경법분야에 속하는 현행 실정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법을 행정법의 각론으로 정착시키기 전에 현행 실정법 중 어떤 법률을 에너지법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에너지법의 기본적인 연구과제이다.

이 논문은 에너지법학을 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 여기

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에너지법분야에 속하는 실정 법률과 현안적인 사항에 속하는 에너지법분야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에너지법의 원리, 대상, 분류체계 등에 관하여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에너지법을 둘러싼 현안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논증하고, 특히 최근 제·개정의 논의가 되고 있는 법률을 주된 논증의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1년 4월 29일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에너지복지법(안)」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감축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법의 주요쟁점에 포함시켜서 논의하도록 한다.

## II.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쟁점사항

### 1.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촉진의 필요성

#### (1) 발전소의 분산화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발전-송·배전-판매’의 단계를 갖는 기존의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운행을 가능하도록 전기공급을 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말한다.<sup>1)</sup>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은 공급자가 통제하는 수직적·중앙집중적 전력망이다. 이에 반하여 지능형전력망은 공급자와 사용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평적·분산적 전력망이다. 지능형전력망은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며 소비자가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력망이라 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기존의 에너지사용은 필연적으로 이산

---

1) S.Benz, Energieeffizienz durch intelligente Stromzähler -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ZUR 2008, 457 ff.

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다른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후변화협약<sup>2)</sup>을 타결하고 부속의정서로 교토의정서<sup>3)</sup>를 채택하였다. 세계 각국은 온난화 예방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금세기 중반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을 들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인류가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 2)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감소시킬 목적으로 197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초의 세계기후변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유엔은 유엔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988년 토론토에서는 “기후와 세계안전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는 2005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20%의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요구하였다. 1990년에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내용을 포함하는 1차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1990년에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a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C)”를 발족시켰다. 지구 전체의 온난화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협의체가 작성한 초안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소위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으로 채택되었고, 유엔회원국 154개국이 서명함으로써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매년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종영, 녹색성장과 산업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통권 제36호, 2009, 140쪽 이하; 이종영, 독일의 청정개발체계(CDM)에 관한 법률,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2009, 295쪽 이하; Enquete-Kommission des Deutschen Bundestages, Schutz der Erdatmosphäre, Mehr Zukunft für die Erde - Nachhaltige Energiepolitik für dauerhaften Klimaschutz, BT-Drs. 12/8600, Bonn 1994; W.Frenz, Klimaschutz und Instrumentenwahl - Zum Stand nach der Konferenz von Den Haag und vor der Konferenz von Bonn, NuR 2001, S.301 ff.
- 3) 이에 관하여는 이종영/백옥선, 독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 제정배경과 체계, 중앙법학 제10집 제1호, 2008, 395쪽 이하; Ch.Bail, Das Klimaregime nach Kyoto, EuZW 1998, S.457 ff.; A.Reuter, Grund- und Grundrechtsmängel des CO2-Emissionshandels in der EU, RdE 2003, S.262 ff.; C.Weidemann, Emissionserlaubnis zwischen Markt und Plan - Rechtsstaatsrelevante Probleme des Emissionshandels, DVBl. 2004, S.727 ff.

그런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분산화(分散化)다. 태양광발전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달리 태양전지를 부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발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심의 빌딩이나 아니면 시골 주택, 광활한 평지나 사막, 심지어 넓은 바다 위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규모에 상관없는 만큼 얼마든지 ‘게릴라 발전소’가 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발전의 분산화는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는 기존의 발전소들이 중앙집중식 시스템의 통제에 따라 전력을 생산·공급하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전국에 설치될 경우 수없이 많은 게릴라 발전소를 일괄 통제하기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분산화된 발전소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바로 분산화된 발전소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sup>4)</sup>

## (2) 전력공급의 안정화

지능형전력망은 전기계량기에 추가적으로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인터넷망과 같이 전국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중앙통제가 가능해진다. 지능형전력망은 무계획적이고 분산형인 태양광 전력이나 풍력발전의 정보가 중앙통제소로 집중돼 일괄 처리되면서 효율적으로 발전·송전·배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능형전력망은 전기흐름을 안정화하는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집집마다 설치되는 지능형전력망의 단말기는 개별 소비자에게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시간대별 전력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전기요금이 경제적인 시간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능형전력망은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할 때에도 송전량과 가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하여 지능형전력망은 에너지법분야에서 중요한 목적인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에너지안보라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4) 독일은 전기와 가스의 경쟁을 위한 계량제도의 개방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Öffnung des Messwesens bei Strom und Gas für Wettbewerb)의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미터의 추진을 하고자 한다.

한다.

지능형전력망이 구축되면,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계절별·시간대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sup>5)</sup> 현재 전력시장에서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한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지능형 전력망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능형계량기·지능형가전·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해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상시 수요관리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지능형전력망에 기반하는 지능형계량기는 실시간 전기요금제에 의하여 전기소비자로 하여금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피크타임에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전력 피크가 분산되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전력피크타임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므로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의 안정화를 가져 온다. 현행 주택용 단일요금 체제에서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제품·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능형전력망이 구축되면, 전기요금을 계절별·시간대별로 2~3단계 차등화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을 통하여 전력피크타임에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전력요금이 비싸지 않은 시간대에 전기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편익 또한 증대시킬 수 있다.

현재의 주택용 단일요금제는 지능형 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제품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지능형전력망은 실시간요금제(RTP: Real Time Pricing)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지능형전력망은 환경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된 새로운 주택용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면,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러다임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

5) 지식경제부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전력시장에 정착하고 관련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 주요 계획에 2011년 5월로 실증사업이 완료되는 제주 실증단지 사업의 2단계 운영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본격운영에 들어가는 제주 실증단지는 2013년 5월까지 실시되며 실증지역을 제주 시내 상가·아파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1년 5월까지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전력거래·요금정산 등)를 규정한 실증사업 운용요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 (3) 에너지효율성 향상

지능형전력망은 관련된 지능형전기계량기를 통하여 에너지효율성의 증대와 에너지절약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지능형미터기가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고, 지능형전력망과 지능형미터기를 통하여 에너지효율성과 에너지절약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되고 있다.<sup>6)</sup> 유럽연합은 에너지효율성서비스지침<sup>7)</sup>, 전기에너지공급안전지침<sup>8)</sup> 및 계량기지침<sup>9)</sup>에서 지능형전력망의 도입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성 향상은 에너지법에서 새로운 테마라고 할 수 없으나 기후변화시대에서 가장 시사적이고 매력적인 주제의 하나에 해당한다. 기후변화시대에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축으로 재생에너지정책, 에너지절약정책 및 에너지효율성향상정책으로 구성되는 3개의 요소를 들 수 있다. 법학분야에서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개념은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의대상으로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효율성은 에너지의 획득, 변환, 분배 및 이용을 하는 때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에너지효율성은 열,

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은 에너지 자립 및 노후 전력망의 현대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에 「Grid 2030」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2009년부터 「경제회복 및 재투자 법」에 따라 전력망 현대화에 45억불을 투자하였다. 2008년부터 콜로라도주 볼더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스마트계량기 5만여개 및 전기차 600여대 보급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태양광 발전의 계통 연계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확산을 위하여 2009년 기술개발 로드맵의 수립에 착수하고, 2009부터 2010년간 100억엔 규모의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민간기업 중심으로 지능형전력망 분야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하여 실증사업을 전국 10개 섬에서 추진하고 있다.

7) Richtlinie 2006/3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5.4.2006 über Endenergieeffizienz und Energiedienstleistungen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3/76/EG des Rates, ABl. L 114 vom 27. 4. 2006, S. 64.

8) Richtlinie 2005/89/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8.1.2006 über Maßnahmen zur Gewährleistung der Sicherheit der Elektrizitätsversorgung und von Infrastrukturinvestitionen, ABl. L 33 vom 4. 2. 2006, S. 22.

9) Richtlinie 2004/2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1. März 2004 über Messgeräte, ABl. L 135 vom 30. 4. 2004, S. 1.

10) G. Wustlich, Energieeffizienz: Recht zwischen Ökologie und Ökonomie?, ZUR 2007, 281 f.



전기 및 연료로 대변되는 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 요소와 관련되고 에너지의 종합적인 가치창출 연계체계와 관련된다. 에너지생산, 수송 및 소비 단계에서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보담할 수 있다. 석탄·석유·천연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발전단계에서 발전효율의 향상은 에너지생산 효율성과 관련된다. 에너지수송 시에 송전으로 발생하는 전기손실(누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규모발전소에서 장거리 전선망을 통하여 산업단지와 대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집중적 전기공급에서 전기가 필요로 하는 지역단위에서 소규모 발전소를 통하여 발전함으로써 근거리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적 전기공급을 하는 방식은 에너지수송단계에서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이 된다. 또한 소비적인 측면에서 최종에너지는 동일한 에너지효과를 내는 데에 에너지투입량을 줄임으로써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백열전등을 LED로 교체함으로써 보다 전기를 적게 쓰기도 동일한 밝기를 낼 수 있다.

정치적 분야에서 에너지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야심찬 목표의 설정은 사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하여도 법률적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목표달성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sup>11)</sup> 이것은 특히 수요측면에서 에너지효율성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다. 에너지절약목표의 달성을 위한 제도와 조치는 강제성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에너지절약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제도와 수단의 발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강제적 수단의 도입은 기본권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도적 수단은 에너지효율성을 전기소비자가 스스로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기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11) G. Wustlich, Energieeffizienz: Recht zwischen Ökologie und Ökonomie?, ZUR 2007, 281 f.

는 기반을 구축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사업 중 하나로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을 포함시키고 있고, 이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을 하고 있다.<sup>12)</sup>

지능형전력망은 한편으로 지능형 전기미터의 사용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적용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능형 전기미터는 특정된 계량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전기계량기와 다른 계량기이고 단순한 소비에 중점을 둔 것 이상의 계량기이다. 지능형 계량기는 우선 전기소비를 자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능형 계량기는 전기소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전기수요를 시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지능형 계량기는 원칙적으로 정보교환기능과 조정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능형 계량기에 포함된 이와 같은 추가적 기능으로 인하여 지능형 계량기는 지능형전력망에서 전기계량서비스 및 에너지서비스와 관련한 수많은 혁신과 최적화를 위한 기술적 도구이다. 지능형 계량기를 에너지효율성의 향상과 관련하여 보면, 지능형 계량기는 최종소비자의 소비형태에 관한 개인정보를 확산하고, 실제 전기소비와 이용시간에 정향된 전기요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전기요금의 확대 및 전기소비분석과 개인자문 및 소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능형 전기계량기에 의하여 전기공급자를 수요자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계량기에 나타난 전기사용량을 보거나 전달하고 자동화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게 한다. 지능형 계량기는 원거리에서 전기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선불에 의한 전기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능화된 전기계량기술은 미래에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 탈 중앙화된 에너지의 통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능형 전기계량기는 이러한 변화하는 에너지공급과 시스템에 적합한 최종관리를 가능하게 한다.<sup>13)</sup> 지능형 전기계량기는 전기계량 서비스뿐만

---

12) 독일은 전기와 가스의 경쟁을 위한 계량제도의 개방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Öffnung des Messwesens bei Strom und Gas für Wettbewerb)의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미터의 추진을 하고자 한다.

아니라 전력망의 운영자, 에너지공급자 및 고객에 많은 장점을 가져오는 수많은 행위를 가능하도록 한다.

지능형 전기계량기는 특정된 전기요금으로 전기사용량을 소비자가 조정하도록 하고, 전기소비현황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전기소비자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준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전기소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소비의 행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소비자의 행위는 두개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하나로 전기소비의 절대량을 감소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로 전기수요의 시간대를 합목적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지능형 계량기는 전기소비자에게 혁신적으로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기소비와 전기요금이 사전에 제시되어, 전기소비자는 전기소비를 전기비용이 저렴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경험적으로 5%에서 10%의 전기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sup>14)</sup> 지능형전력망과 지능형 전기계량기에 의한 이와 같은 전기절약효과는 수많은 사회과학적 연구<sup>15)</sup>와 시범사업<sup>16)</sup>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가전부문에서 전기절약은 우선 첫째로 소비형태의 변경에 의하여 실현된다. 예를 들면, 세탁기는 용량에 맞게 세탁물이 가득할 때에만 작동하도록 하고, 컴퓨터나 전등은 해당 장소를 이탈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하고, 세탁건조기는 전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기소비형태를 스마트그리드가 변경시킬 수 있다. 둘째로 전기제품의 구매시에 구매형태

13) Pehnt, Erneuerbare Energie kompakt - Ergebnisse systemanalytischer Studien, 2.Aufl., Mai 2007, S.44 ff.

14) Fischer, Influencing Electricity Consumption via Consumer Feedback. A Review of Experience - Paper submitted to the ECEEE 2007 Summer Study, 4-9 June 2007, pp.7; S.Benz, Energieeffizienz durch intelligente Stromzähler -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ZUR 2008, S.457 ff.(458).

15) Daby, The effectiveness of feedback on energy consumption - A review for DEFRA of the Literature on metering, billing and direct displays, 2006, pp.12; Fischer, ibis, pp.7;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Demand-Side Management Programme, Task XI: Time of Use Pricing and Energy Use for Demand Management Delivery, Subtask 1: Smaller Customer Energy Saving by End Use Monitoring and Feedback. Report, 2005, pp.23.

16) 독일의 경우 Heidelberg 도시공사는 Heidelberg에 있는 에너지환경연구소(ifeu: Institut für energie- und Umweltforschung)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의 변경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지능형전력망과 지능형 전기계량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전기에너지의 절약이나 전기사용 피크시간대 형성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절약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결국 에너지수요조정은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전기소비를 시간적으로 이전하게 한다.<sup>17)</sup> 보다 정확하게는 수요측면에서 전기소비 형태를 변화를 시킴으로서 공급자 측에서 효율성획득을 실현한다. 왜냐하면 발전소의 전기소비 피크타임에 대한 부담가중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2.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입법

### (1) 배경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금 및 전기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는 전기시장의 동향을 고려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2010년 10월 29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법률의 제정이유로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력·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인증·표준화 및 비용 지원,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함을 들고 있다.<sup>18)</sup>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력·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위하여 2010년 1월에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완료시점을 2030년으로 설정하고, 향후 20년의 사업기간과 총 27.5조원 규모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17) M.Wieser, Energiespeicher als zentrale Elemente eines intelligenten Energieversorgungsnetzes - Rechtliche Einordnung, ZUR 2011, 240ff.

18)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 5쪽 이하 참조.

러므로 지능형전력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전력, 정보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에 따라 각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간 긴밀한 정책협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조정과 협력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동법률의 제정필요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관하여 입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동법률은 정부가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위한 법률이다.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을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은 법학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 때문이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은 「전기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이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 전기사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제도, 사업허가·취소, 전기사업의 양수, 분할·합병, 전기공급의무, 전력거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률로 전력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산업,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규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지능형전력망의 체계적 관리를 하기에는 부족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관련된 관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주요정보 기반시설 보호와 기술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금융·통신·전력 등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률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관련 산업 육성 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법률적 근거로 기존의 「전기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개별 법률은 고유한 규율범위와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변화라고 할 수 있는 전기사업과 정보통신이 융합하는 분야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은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주요내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률의 주요내용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과 추진,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과 지원, 지능형전력망 기기 등에 대한 인증,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장치 마련,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률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률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내부 규칙적인 성질을 가지는 계획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동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를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규율하지 못한다.<sup>19)</sup> 왜냐하면 동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를 포함하여 개인을 구속하

19) 이에 관하여는 W.Hoppe, Zur Struktur der Normen des Planungsrechts, DVBl 1974, 641 ff.; W.Köck, Rechtsfragen der Umweltzielplanung, NuR 1997, 528 ff.; R.Bartlspeger, Planungsrechtliche Optimierungsgebote, DVBl 1996, 1 ff.; Fr.Scharpf, Planung als politischer Prozess. Aufsätze zur Theorie der planenden Demokratie, S. 30 ff.

거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정부에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제조사업,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자에게 사업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률 제12조는 사업자 등록제도를 임의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모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 등록제도는 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법률 제12조는 사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등록자유를 부여하고 있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동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출안과 달리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사업 중 지능형전력망 기기·제품 제조사업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의 확보와 관계가 없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달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동법률은 모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아닌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sup>20)</sup>

20) 여기서 등록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동법률안 제12조제1항은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합치하지 않게 되면, 등록을 거부하게 되어 전형적인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는 F.Curtius, *Entwicklungstendenzen im Genehmigungsrecht*, S.105 ff.; F.Schoch, *Der Verwaltungsakt zwischen Stabilität und Flexibilität*,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Hrsg.), *Innovation und Flexibilität des Verwaltungshandelns*, S.199 ff.; K.-H.Ladeur, *Die Zukunft des Verwaltungsakts. Kann die Handlungsformenlehre aus dem Aufstieg des informalen Verwaltungshandelns lernen?*, *VerwArch*, Bd.86(1995), S.511 ff.; Ch.Bumke, *Verwaltungsakte*,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I, S.1031 ff.

### (3) 문제점

동법률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부사업과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누출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률의 제정으로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전기저장시설을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하는 전기의 경우에 발전이 안정적이 못한 것이 특징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날씨가 맑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발전량이 많으나,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발전량이 적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기수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의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에서 발전하는 정책은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지능형전력망은 바로 이와 같은 발전량이 안정적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발전량이 많을 때에 전기를 축전시설에 충전하여 두고, 발전량이 부족할 때에 충전된 축전시설에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배전사업, 구역전기사업, 전기판매사업으로 구분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으로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사업의 형태는 위에서 언급한 발전량이 많거나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에 전기저장시설에 전기를 비축한 후에 발전량이 적거나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때에 판매하는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의 유형을 동법에서는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전기사업은 전기를 축전할 수 있는 시설이 경제성이 있을 정도로 개발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실시간으로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현행 『전기사업법』은 조화되지 못하는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제7조제3항에 의하면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이 많을 때에 전기를 비축한 후 발전량이 적을 때에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할 때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자는 발전사업자인 동시에 전기판매자이고, 두 개의 사



업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전기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전기사업형태에 맞춰 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은 지능형전력망이 등장함으로써 이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 Ⅲ. 에너지복지법 입법적 쟁점

#### 1. 에너지복지법의 입법화 배경

세계는 에너지공급망의 붕괴가능성,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에너지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세 가지 유형의 에너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국제적 에너지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강도에 있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에너지공급망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대응은 국내법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국내적으로 에너지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에너지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산업부문에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정책, 수송분야에서 친환경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정책과 제도<sup>21)</sup>를 포함하여 건물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효율성의 증대와 관련한 건물에너지효율 등급제도는 에너지와 환경의 융합된 분야로서 세간의 많은 관심사항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과 에너지환경에 대한 법적 대응과 비교할 때에 에너지 빈곤층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1) 이에 관하여는 현준원/김현희,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성장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3쪽 이하; 이성인, 국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30쪽 이하; 이준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10쪽 이하; W.Zimmer/U.Fritsche, Klimaschutz und Straßenverkehr, S.35 ff.

국제원유가격이 100달러를 초과함에 따라 저소득층은 생활에 필수적인 취사와 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는 생존에 필요한 주거와 식품에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국민에 대한 주거복지는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의 보장만으로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 달성된다고 할 수 없고, 에너지분야에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난방에 대한 보장도 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에너지복지에 대한 이슈는 복지에 대한 관심사항이 더 이상 앵겔계수<sup>22)</sup>만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소득보전용으로 일정한 광열비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일관된 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sup>23)</sup> 「에너지복지법」의 입법화논의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필수조건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은 단순히 에너지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sup>24)</sup> 복지정책이 잘 발달된 선진국들은 에너지분야의 복지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sup>25)</sup>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복지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복지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적 정책에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sup>26)</sup>

22) 앵겔계수(Engel's coefficient)는 1857년에 당시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 작센의 통계국장인 앵겔이 153세대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지출 총액 중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한 앵겔의 법칙에 근거하여 총가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23) 현재 정부는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비목 중 전기, 난방, 수도요금 등을 포함하는 ‘광열수도비’(6.7%, 84,574 원)에서 전기요금과 난방비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있다.

24) 에너지복지법안, 노영민 대표발의, 의안번호 10415.

25) Ch.de Wyl, Grundversorgungspflichten gegenüber Letztverbrauchern, in: J.-P.Schneider/Ch.Theobald (Hrsg.),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Aufl. S.702 ff.

26) 에너지복지정책은 에너지복지에 관한 제도를 안정화하는 법률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참여정부부터 진행되었다. 2007년 5월 10일 한전과 가스공사를 포함한 25개 에너지기업과 기관은 공동으로 에너지복지현장을 채택하고,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의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몇 년 전부터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총조사 결과를 보면 에너지 소비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평균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는 2004년 11,300천 kcal이었으나 2007년에는 8,965천 kcal로 감소한 반면,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3,763천 kcal에서 15,323천 kcal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이 고소득 가구에 비하여 크게 적지만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이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14% 이상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1.5%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7)</sup>

에너지복지는 에너지 빈곤을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빈곤은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이다. 에너지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별로 적합한 법정책이 요구되고,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sup>28)</sup> 에너지빈곤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는 중요한

27)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매우 높고 에너지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공급자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미 광열비가 포함된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었고 이 외에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 요금 할인 프로그램, 저소득 가구의 난방기기 개보수 및 단열보조 사업, 동절기 전력 및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28) 에너지복지법이 없는 현재에도 에너지복지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복지법의 제정필요성이 논의되고, 이미 국회에서 에너지복지법(안)이 상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적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다. 에너지복지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지원기관간에 유기적·종합적으로 되지 않고, 개별기관간에 산발적으로 지원됨으로써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복지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비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 에너지 빈곤에 처한 가구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넷째, 등유나 LPG처럼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진상현/박은철/황인창, 에너지빈곤의 개념 및 정책대상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2호, 2010, 52쪽 이하.

국가의 과제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제도<sup>29)</sup>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정을 요구받고 있다.<sup>30)</sup>

29) 현행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시행 주체 (2009년도 예산)
① 에너지효율개선(시설·장비 지원)	고효율조명기기	무상보급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개소)	전력기금(230억원) 전력기금(125억원)
	에너지효율개선	물품, 시공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권기금(243억원) 복권기금(42억원)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보급	무상지원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	전력기금(120억원)
	② 가격보조	전기요금 할인	20% 할인 (*07.1, 15%→20%)	기초생활수급자
20% 할인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20% 할인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할인		20% 할인	사회복지시설	한국가스공사
		10~12%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감면	임대아파트(85㎡이하) 사회복지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③ 현물지원	연탄 현물(쿠폰)보조	연탄가격인상에 따른 현물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특회계(64.5억원) 에특회계(85.5억원)
	진급연료지원	연료 1월분 지원 (난방유, 프로판, 연탄 중 택일)	기초생활수급자중 소년소녀, 조손가구	한국에너지재단
④ 공급중단 유예	전기제한공급 유예	혹서기(7~9월) 혹한기(12~2월)	주거용 전기제한 공급 대상가구	한국전력공사
	전기제한공급 (진류제한장치)	220W (10,000대 운영)	주거용 채납가구	
	가스공급중단 유예	동절기 (전년10월~금년5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가스 사업자
⑤ 저렴한 에너지 공급확대	도시가스 보급확대	주배관망 건설지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에특회계(311억원)
		도시가스사업자 공급배관 용자	도시가스 소외지역	에특회계(800억원)
		사용자 시설부담금 용자	도시가스 소외지역	에특회계(500억원)
⑥ 소득보조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산정시 광열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부(764.4억원)
	연료비 보조사업	월 2만원 지원 (한시적)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부 (*08년 2,064억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복지부(*08년 72억원)	

30) 영국은 「따뜻한 가정 및 에너지보전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을 제정하여 에너지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미국은 1976년부터 「에너지보

## 2. 주요쟁점사항

### (1) 에너지복지법의 학문적 분류

『에너지복지법(안)』을 에너지법의 분야에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법의 분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에너지복지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빈곤의 원인을 에너지빈곤층의 낮은 소득에 둔다면,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빈곤은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를 국가가 재정적 또는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하여 난방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에 포함하여 수급을 받도록 한다면 법률체계적으로 적합하다. 동법은 급여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분류하고 있다. 에너지빈곤은 주거에서 요구되는 주택에너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그러므로 에너지빈곤을 위한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주거급여에 속하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은 주거급여의 지급유형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비용에 관하여는 동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 동법 제11조제1항은 수급품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의 유지수선비의 지급방법과 기준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에너지사용비가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은 주거에너지비의

---

전 및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을 제정하여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총 주거비용을 줄이는 주택단열지원사업 시행 중이다.

지급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를 하고 있다.

에너지빈곤의 원인을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주택의 낮은 에너지효율성에서 찾는다면, 이 경우 에너지빈곤과 관련된 에너지복지는 복지법적인 측면보다는 에너지법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sup>31)</sup> 현재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정부의 사업은 난방 및 단열개선사업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효율성의 증대를 관장하는 현행 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는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으로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에너지법」 제4조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에너지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빈곤의 원인을 에너지빈곤층의 낮은 에너지효율성에 두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되고, 에너지복지는 에너지법으로 분류된다.

「에너지복지법(안)」은 복지의 대상을 에너지빈곤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빈곤을 해결하는 제도적 수단에 따라서 관장하는 법이 달라지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에너지복지를 복지법적으로 접근한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수급대상을 법령에서 정하고,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빈곤에 관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 에너지복지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선진국은 에너지소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급여방식보다는 에너지효율개선과 같은 간접지원방식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에너지복지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에너지

31) P.Salje, Versorgungssicherheit, Preisgünstigkeit und Umweltverträglichkeit als zentrale Forderungen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 Wettbewerbsfähigkeit?, in: Energieversorgung und Umweltschutz, S. 47 ff.

지 효율개선에 관한 정부사업은 에너지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성의 증대를 통하여 국가의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이라는 정책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복지는 복지법적 관점보다는 에너지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국가 전체적으로 적합한 방안으로 사려된다.<sup>32)</sup>

## (2) 에너지복지의 대상자

에너지복지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빈곤층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 가구 수는 약 123만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4인 기준 136만원 이하로 파악되고 있지만 등유나 프로판가스처럼 오히려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3)</sup> 에너지 빈곤은 취사와 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에너지 빈곤은 취사와 난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육체적·심리적 질환을 동반하기도 하고, 계절적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34)</sup>

에너지복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기본적으로 수급대상을 어느 범위로 확정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복지법도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와의 연계성이나 대상자인 에너지빈곤층을 확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에너지복지법(안)」도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우선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 한 「에너지복지법(안)」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32) 에너지복지의 저소득층 복지, 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 고용창출이라는 네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33) 이에 관하여는 박광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20쪽 이하; 윤순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환경·복지·고용의 연결: 에너지빈민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6, 172쪽 이하 참조.

34) 북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가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기관지 질환 발병률이 높고 영양실조와 우울증 등 복합적인 심리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진상현/박은철/황인창, 에너지빈곤의 개념 및 정책대상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2호, 2010, 53쪽 이하).

따른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에너지빈곤층 중 가구소득과 에너지구입비용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에너지복지법(안)』 제6조도 “이 법에 따른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에너지빈곤층 중 가구소득과 에너지구입비용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에너지복지의 목적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에너지복지법(안)』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고 에너지소비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의 형평성 제고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소비량을 평균적인 일반가구의 수준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에너지복지법(안)』은 에너지빈곤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면, 에너지복지를 통한 국가전체적인 에너지효율성 증대와 온실가스감축이라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복지법(안)』이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소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에너지복지법(안)』은 모두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주택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진단 및 안전점검, 주택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주택 개선,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 및 설비 교체 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지원을 구체적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복지법(안)』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소비의 형평성 제고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개별조문에서는 이와는 다른 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복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된 결과는 대체적으로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저소득 가구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요관리사업이었다. 『에너지복지법(안)』은 현재 복지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보다 저소득 계층의 낮은 주택의 단열성능을 높이고 저효율 가전제품을 교체해 줌으로써 거주하는 주택의 낭비적인 에너지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부



분에 한해서 에너지를 직접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에너지복지법(안)」의 목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소비 형평성의 제고를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소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다.

#### (4) 에너지이용권제도

국회에 제출된 「에너지복지법(안)」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에너지복지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에너지이용권 문제였다. 에너지이용권은 에너지수급자에 대하여 쿠폰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의 에너지복지제도이다. 에너지이용권제도는 수혜자가 전기, 난방 또는 취사에 필요한 에너지이용증서(쿠폰, 카드 등)를 지급받아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에너지를 공급 받고, 공급자는 에너지이용증서를 정부에 제시하여 사후에 비용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에너지이용권제도는 에너지효율성의 개선을 통한 에너지복지와는 달리 에너지 직접 지원제도에 해당한다.

정부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에너지복지수급자가 에너지구입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지원금을 에너지사용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예상된다. 에너지이용권제도는 에너지복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에너지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에너지쿠폰으로 지급하여 에너지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sup>35)</sup> 또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에너지가격할인제도로 수행하게 되면, 자원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이용권제도가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가격할인에 의한 자원왜곡은 가격 탄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데, 필수재인 에너지는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가격이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여 할인을 받는다고 하여 전기나 가스를 낭비하는 저소득가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다. 저소득 가구가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때 가격이 높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이유는 가격이

35) 박광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78쪽 이하.

낮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공급받지 못하여 전열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이용권제도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공급위주의 해결방식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수혜대상의 설정이나 정책의 실효성,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 IV. 전기요금의 현실화

### 1.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전기는 1차 에너지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2차 에너지이다. 전기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산업, 교육,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자의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36)</sup>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많은 국가에서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독점사업은 시장경제질서와 거리가 있는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장경제의 주역인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에 의하여 통제될 수 없다. 독점사업에 대한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비록 가격결정에 속하는 분야라고 하여도 깊게 간여할 수 있다. 2011년 겨울은 유난스레 추웠다. 전기요금이 발전의 연료가 되는 1차 에너지원보다 저렴하여, 전기난방기기의 사용이 급증하였다. 2011년 겨울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다. 전기난방기기의 증가는 겨울 최대전력에서 25%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상업용의 난방부하는 통계적으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전기사용량의 피크로 인하여 정부는 필요에 따라 단전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전기난방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이었다.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2011년 에너지법

36) G.Jansen, Die Ermittlung der Kosten für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snetze, S.121 ff.; J.F.Baur/K.Henk-Merten, Preisaufsicht über Netznutzungsentgelte, RdE 2002, 193 ff.; P.Salje, Die Kalkulation von Netznutzungsentgelten seit dem 1.1.2004, ET 2004, 109 ff.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전기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고급에너지인 전기요금이 전기를 생산하는 석유나 도시가스과 같은 1차 에너지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에너지소비자는 전기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소비행위를 정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교육청은 학교의 난방시설을 기존의 석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를 전기난방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sup>37)</sup> 실제 2011년 1월의 혹한에 동계 전기피크 유발은 전기난방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38)</sup> 저렴한 전기요금은 전력소비량을 비효율적으로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전기에너지의 발전원인 1차 에너지사용을 비효율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전기요금의 저가정책은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고착화하게 된다. 2004년 이후 도시가스 및 등유가격은 45%가량 인상되었으나 전기요금은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13% 정도가 인상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다소비 구조이다.<sup>39)</sup> 이러한 원인은 전기요금의 저가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배출저감을 위한 정책에 많은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저가 전기요금정책은 발전사인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로 이어진다. 이로 인하여 한국전력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로 신규 발전소 건설과 해외사업추진에 장애를 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2008년 이후 연속된 적자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sup>40)</sup> 국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전적격심사에서 입찰자의 재무능력은 기술력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다.<sup>41)</sup> 저가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의 악화는

37)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전기냉난방기(EHP:Electric Heat Pump)는 4kW 기준 약 5백만원 을 지원하고, 교실당 1-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방안을 정하고 있다.

38) 국내에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전기냉난방기는 40만대 이상이 보급되어 겨울철 전기피크수요의 증가요인이다. 이로 인하여 전기냉난방기에 의한 전기사용량은 206만 kW로 추정되고 있다. 전기냉난방기의 누적보급량은 2001년 6만 7천대, 2007년 15만 5천대, 2008년 24만 9천대, 2009년 33만 9천이고, 급기야 2010년 11월에 40만 3천대에 이르고 있다.

39)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전력사용량이 OECD 평균의 1.7배이다.

40) 한국전력은 최근 3년간 누적적자 규모가 영업손실 6.4조원, 당기순이익 3.1조원에 이르고 있다.

해외사업의 추진에 당연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sup>42)</sup>

## 2.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규정의 쟁점사항

### (1) 교육용전기요금의 특례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학교 공공요금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교 재정에 전기요금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어, 현재 계약종별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100% 수준을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특례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sup>43)</sup>

동법률안은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을 산업용전력 요금의 8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요금수준을 정하는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체제<sup>44)</sup>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의

- 4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Pre-Qualification)는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42) 실제 한국전력은 인도네시아 발리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관한 해외입찰에서 최근 3개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재무능력을 평가 받았으나 2년 연속 적자로 심사에 탈락하였다.
- 43)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3;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714.
- 44)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정책적 요인을 반영한 종별요금제 운용>

(단위 : 원/kWh, %)

종 별	적용범위	'03년 실적		'08년 실적	
		판매단가(지수)	판매단가(지수)	총괄원가(지수)*	
주택용	주거용	88.00(118)	97.58(124)	102.02(123)	
일반용	공공, 영업용	100.59(135)	95.30(121)	90.12(109)	
교육용	학교, 박물관 등	90.24(121)	78.58(99)	87.05(105)	
산업용	광업, 공업용	갑	80.02(107)	79.71(101)	89.64(108)
		을, 병	57.67(77)	64.53(82)	69.14(83)
농사용	농업, 어업용	43.45(58)	42.38(54)	108.19(130)	
가로등	가로등, 보안등	65.75(88)	72.50(92)	88.35(106)	
평 균		74.68(100)	78.76(100)	82.97(100)	

\* 판매단가= 전기판매수입 / 전기판매량: \*) 총괄원가는 '07년 실적임

단가는 주택용, 공공기관 등의 일반용, 산업용(갑)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산업용(을, 병), 농사용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sup>45)</sup>

정부의 저가전기요금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도에 약 3조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용도별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도 비교적 저가로 공급됨으로써 많은 학교에서 1차 에너지 난방에서 전기난방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어,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시기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어 향후 전기피크 발생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학교에서 냉난방기를 전기냉방난기로 교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렴한 전기요금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적합한 방향의 제도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제안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용도별로 전기요금의 부가기준을 정하고 요금수준을 명문화 하는 것은 왜곡된 요금체계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sup>46)</sup>

## (2)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화

전기요금에 관한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산업분야에서 한국전력이 발전, 송전 및 배전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러한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에 국회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요금이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

45) 2008년 11월까지 산업용요금은 20.5% 인상한 반면, 교육용요금은 14.1% 인하하여 전기사용행태가 유사한 산업용(갑)에 비해서 요금수준이 약간 낮은 상황이다. 2007년말 기준 원가보상률 96.3%로 종합원가보상률(101.9%)보다 낮아짐. 즉 다른 부문에서 교육용으로 약 238억원의 교차보조가 발생함. ('07년 판매량기준).

46) 지식경제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 2, 13쪽 이하.

장관으로 하여금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가한 전기공급약관<sup>47)</sup>의 전기요금 체계 등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 현재 「전기사업법」의 개정법률안으로 제출되어 있다.

현행 전기요금의 결정시스템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식경제부에 인가신청을 의뢰하고, 인가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전기위원회에 속한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가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전기요금 변경을 하는 경우에 2010년 기준으로 전력판매량의 47.7%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6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데에도 현행 「전기사업법」으로는 이에 대한 검토를 국회에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기공급약관의 전기요금체계 등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sup>48)</sup>

현재 정부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으면

47)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제16조의2는 전기공급 약관의 종류를 기본공급약관, 선택공급약관, 보완공급약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대한 약관을 말한다. 선택공급약관은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고, 보완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 간 거래를 위한 약관이다.

48) 지식경제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 4. 21쪽 이하 참조.

<현행 전기요금체계 현황>

(단위: 원/kWh, 원가회수율은 %)

종 별	적용범위	요 금 체 계	판매량 비중(%)	판매 단가	원가 회수율
주택용	주거용	·6단계 누진요금제	20.3	119.85	93.7
일반용	공공, 영업용	·계절별 차등(7~8월 고율) ·1,0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	25.8	98.93	99.4
교육용	학교, 박물관 등	·계절별 차등(7~8월 고율)	1.7	87.23	90.1
산업용	광업, 공업용	·계절별 차등(7~8월 고율) ·3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	47.7	76.63	96.5
농사용	농업, 어업용	·단일요금(갑, 을, 병 차등)	1.2	42.54	36.5
가로등	가로, 보안등	·단일요금	0.7	81.13	88
십야전력		·계절별 차등(11~2월 고율)	2.7	50.49	73.6
평 균	-	-	100%	86.12	93.7

\* 판매량 비중, 판매단가 등은 '10년 실적 기준, 원가회수율은 '10. 8. 1 요금조정시점 기준임.

전기요금 관련 자료를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법」 제 20조는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에게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은 현재 「국가재정법」 제7조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제출, 「국가균형발전법」 제21조의 지역발전주요시책 보고서 제출, 「교통안전법」 제10조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 보고서 제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국방개혁 향후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다. 국회보고의무의 대상은 주로 법률에 의해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고, 공공요금의 인가에 관하여는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한 입법례는 없다. 공공요금은 한편으로 시장적 요소와 다른 한편으로 정책적 요소라는 양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금은 시장질서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국가가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국가가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한 경우에 개입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sup>49)</sup>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전기요금체계에 대하여 현재 행정부에서 다양하게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까지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전기공급약관의 개정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에 전기사용자는 전기공급약관의 시행 전에 한전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50)</sup>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사업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전기공급약관의 전기요금체계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질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49) W.-S.Zylka, Marktaufsicht im Stromhandel, 36 ff.; G.Jansen, aaO., S.145 ff.; S.Schulte-Beckhausen, Stromhandel - Möglichkeiten und Grenzen im neuen europäischen und nationalen Ordnungsrahmen für Energie, RdE 1999, 51 ff.

50) 지식경제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 4, 23쪽 이하 참조.

## V. 맺는 말

에너지와 자원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법은 다른 법학분야와 비교할 때에 법학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다. 에너지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쟁점사항이 있었음에도 법학적인 관점에서 정책결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적합한 논리와 이론을 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과 더불어 기후변화라는 태풍의 눈에는 에너지가 위치하였고,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으로써 법학도 에너지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에너지법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발전의 분산화와 실시간 전기요금제를 통하여 전기에너지의 절약과 전기제품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가 산발적으로 분산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필요전력에 대한 통제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분산화된 발전소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바로 분산화된 발전소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능형전력망은 실시간요금제(RTP: Real Time Pricing)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택용 단일요금제는 지능형 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제품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지능형전력망은 환경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된 새로운 주택용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여, 지능형전력망은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러다임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법은 「전기사업법」이다. 「전기사업법」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분야의 경제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으로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사업의 형태는 전기저장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은 전기요금의 실시간 변동을 원칙으로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현행 「전기사업법」은 조화되지 못하는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전기저장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전기사업법」은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전기사업법」은 지능형전력망이 극대화되고 사업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법의 또 다른 이슈로는 “에너지복지법”을 들 수 있다. 에너지비용의 증대로 인한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광열비의 지급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효율성과도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에너지복지법의 제정필요성이 논의되고 있고, 이미 국회에서 2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에너지법학적으로 “에너지복지법”을 에너지법의 분야에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법의 분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복지법”은 일반복지와는 다른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에너지효율성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복지법의 분야라기보다 에너지법분야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복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나 국회의 논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예산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복지법”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는 후에 실정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법상의 또다른 이슈로는 2011년 혹한기에 발생한 전기사용량의 증대로 인한 전기부족에 대한 원인으로 제기된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용도별로 가격기준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용전기에 대하여 저렴한 전기요금기준이 적용되므로 인해 학교의 냉난방기기를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교육청

이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급격하게 증대한 전기냉난방기기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혹한이나 혹서기간동안에 전기사용량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설정에 관한 적절한 수준이 요구된다. 또한 전기요금의 책정에 관한 절차에 있어 현행 「전기사업법」은 국회의 개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그러나 국회는 필요한 경우에 상시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어, 「전기사업법」에서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기요금에 관한 국회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
- 박광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 윤순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환경·복지·고용의 연결: 에너지빈민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6
- 이성인, 국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 이종영, 독일의 청정개발체계(CDM)에 관한 법률,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2009
- 이종영/백옥선, 독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 제정배경과 체계, 중앙법학 제10집 제1호, 2008
- 이준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지식경제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
- 지식경제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
- 진상현/박은철/황인창, 에너지빈곤의 개념 및 정책대상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2호, 2010
- 현준원/김현희,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성장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Richtlinie 2006/3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5.4.2006 über Endenergieeffizienz und Energiedienstleistungen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3/76/EG des Rates, ABl. L 114 vom 27. 4. 2006, S. 64.
- Bail, Ch., Das Klimaregime nach Kyoto, EuZW 1998, S.457 ff.
- Bartlspeger, R., Planungsrechtliche Optimierungsgebote, DVBl 1996, 1 ff.
- Benz, S., Energieeffizienz durch intelligente Stromzähler -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ZUR 2008, 457 ff.
- Bumke, Ch., Verwaltungsakte,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II, S.1031 ff.
- Curtius, F., Entwicklungstendenzen im Genehmigungsrecht, S.105 ff.
- Daby, The effectiveness of feedback on energy consumption - A review for DEFRA of the Literature on metering, billing and direct displays, 2006, pp.12
- Enquete-Kommission des Deutschen Bundestages, Schutz der Erdatmosphäre, Mehr Zukunft für die Erde - Nachhaltige Energiepolitik für dauerhaften Klimaschutz, BT-Drs. 12/8600, Bonn 1994
- Fischer, Influencing Electricity Consumption via Consumer Feedback. A Review of Experience - Paper submitted to the ECEEE 2007 Summer Study, 4-9 June 2007,
- Frenz, W., Klimaschutz und Instrumentenwahl - Zum Stand nach der Konferenz von Den Haag und vor der Konferenz von Bonn, NuR 2001, S.301 ff.
- Hoppe, W., Zur Struktur der Normen des Planungsrechts, DVBl 1974, 641 ff.
-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Demand-Side Management Programme, Task XI: Time of Use Pricing and Energy Use for Demand Management Delivery, Subtask 1: Smaller Customer Energy Saving by End Use Monitoring and Feedback. Report, 2005, pp.23.
- Jansen, G., Die Ermittlung der Kosten für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snetze, S.121 ff.; J.F.Baur/K.Henk-Merten, Preisaufsicht über Netznutzungsentgelte, RdE 2002, 193 ff.
- Köck, W., Rechtsfragen der Umweltzielplanung, NuR 1997, 528 ff.
- Ladeur, K.-H., Die Zukunft des Verwaltungsakts. Kann die Handlungsformenlehre aus dem Aufstieg des informalen Verwaltungshandelns lernen?, VerwArch, Bd.86(1995), S.511 ff.
- Pehnt, Erneuerbare Energie kompakt - Ergebnisse systemanalytischer Studien, 2.Aufl., Mai 2007, S.44 ff.
- Reuter, A., Grund- und Grundrechtsmängel des CO<sub>2</sub>-Emissionshandels in der EU, RdE 2003, S.262 ff.
- Richtlinie 2004/2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1. März

- 2004 über Messgeräte, ABl. L 135 vom 30. 4. 2004, S. 1.
- Richtlinie 2005/89/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8.1.2006 über Maßnahmen zur Gewährleistung der Sicherheit der Elektrizitätsversorgung und von Infrastrukturinvestitionen, ABl. L 33 vom 4. 2. 2006, S. 22.
- Salje, P., Die Kalkulation von Netznutzungsentgelten seit dem 1.1.2004, ET 2004, 109 ff.
- Salje, P., Versorgungssicherheit, Preisgünstigkeit und Umweltverträglichkeit als zentrale Forderungen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 Wettbewerbsfähigkeit?, in: Energieversorgung und Umweltschutz, S. 47 ff.
- Scharpf, Fr., Planung als politischer Prozess. Aufsätze zur Theorie der planenden Demokratie, S. 30 ff.
- Schoch, F., Der Verwaltungsakt zwischen Stabilität und Flexibilität,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Hrsg.), Innovation und Flexibilität des Verwaltungshandelns, S.199 ff.
- Schulte-Beckhausen, S., Stromhandel - Möglichkeiten und Grenzen im neuen europäischen und nationalen Ordnungsrahmen für Energie, RdE 1999, 51 ff.
- Weidemann, C., Emissionserlaubnis zwischen Markt und Plan - Rechtsstaatsrelevante Probleme des Emissionshandels, DVBl. 2004, S.727 ff.
- Wieser, M., Energiespeicher als zentrale Elemente eines intelligenten Energieversorgungsnetzes - Rechtliche Einordnung, ZUR 2011, 240ff.
- Wustlich, G., Energieeffizienz: Recht zwischen Ökologie und Ökonomie?, ZUR 2007, 281 f.
- de Wyl, Ch., Grundversorgungspflichten gegenüber Letztverbrauchern, in: J.-P.Schneider/Ch.Theobald(Hrsg.),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Aufl. S.702 ff.
- Zimmer,W./Fritsche,U., Klimaschutz und Straßenverkehr, S.35 ff.
- Zylka, W.-S., Marktaufsicht im Stromhandel, 36 ff.

### <국문초록>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발전의 분산화와 실시간 전기요금제를 통하여 전기에너지의 절약과 전기제품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가 산발적으로 분산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필요전력에 대한 통제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분산화된 발전소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바로 분산화된 발전소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능형전력망은 실시간요금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지능형전력망은 환경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된 새로운 주택용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능형전력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법은 「전기사업법」이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현행 「전기사업법」은 조화되지 못하는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전기저장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전기사업법」은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전기사업법」은 지능형전력망이 극대화되고 사업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비용의 증대로 인한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광열비의 지급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효율성과도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너지복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국회의 논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예산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복지법”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는 후에 실정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법상의 또 다른 이슈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용도별로 가격기준을 달리하여 정하

고 있다. 급격하게 증대한 전기냉난방기기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휴한이나 혹서기간동안에 전기사용량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설정에 관한 적절한 수준이 요구된다.

주제어 : 에너지법,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 에너지 공급, 전기요금체계

## Aktuelle Herausforderungen und Aussicht des Energierechts

Yi, Jong-Yeong\*

Die Regierung haben zur Klima-und Energiepolitik unter anderem folgende Ziele beschlossen: Der Ausstoß von Treibhausgasen wie CO<sub>2</sub> soll bis 2020 um 30 Prozent zu BAU reduziert werden. Vor diesem Hintergrund wurden im Rahmen eines Forschungsprojektes rechtliche Instrumentarien, die zu einer effizienteren Energienutzung führen, untersucht und weiterentwickelt. Zur untersuchung der 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für Smart Grid ist zunächst zu klären, was unter dem Begriff Smart Grid zu verstehen ist und welche Bedeutung Smart Grid für Energieeffizient- und Energieeinsparsteigerungen hat. Der Beriff Smart Grid meit zum einen den Einsatz intelligenter Stromzähler und zum anderen die dadurch ermöglichten technischen Anwendungen und Dienstleistungen. Intelligente Zähler ermöglichen vor allem eine detaillierte Messung des Stromverbrauchs. Sie erfassen nicht nur den Stromverbrauch, sondern können auch den individuellen zeitlichen Verlauf der STromnachfrage erfassen. Daneben diese zusätzlich Funktionen sind intelligente Zähler regelmäßig auch über Kommunikations- und Steuerungsfunktionen.

Vor dem Hintergrund, dass durch den Einsatz von Smart Grid nicht nur erhebliche Stromeinsparungen erzielt werden können, sondern zusätzlich auch zahlreiche Möglichkeiten für Optimierungen im Zusammenhang des Lastenmangements und der Stromlieferprozesse eröffnet werden, verwundert es sehr, dass die Entwicklung von Smart Grid in Korea noch in den Anfängen steckt.

Ob die Pflicht zur Grundversorgung privat- oder öffentlich-rechtlichen Charakter hat, ist auch nach der Gesetzesnovellierung fraglich. Für Tarifversorgung hat die hö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diese Frage bislang offen gelassen. Grundversorgung unterscheiden sich zusätzlich durch eine unterschiedliche potentielle Kundengruppe. Die Grundversorgung bezieht sich auf Haushaltskunden. Zur Versorgung berechtigt und damit potenzieller Tarifikunde

---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Law School, Ph.D.



war nach bisheriger Rechtslage jedermann, der in Niederspannung versorgt werden wollte. Infolge einer dem Zweck der Versorgungspflicht entsprechenden weiten Auslegung erfasste der Begriff natürliche und juristische Personen sowie die Parteien nicht rechtfähiger Zusammenschlüsse, sofern diese Letztverbraucher waren, als einen eigenen Energiebedarf in dem entsprechenden Gemeindegebiet hatten.

Das Gebot der Diskriminierungsfreiheit als Anforderung an die Bedingungen und Entgelte für den Netzzugang verwundert zunächst insoweit, als die Diskriminierungsfreiheit weniger eine Eigenschaft bestimmter Bedingungen oder Entgelte ist, sondern vor allem ihre einheitliche Anwendung gegenüber den unterschiedlichen Netzzugangspetenten begriff. In der Praxis ist ohnehin eine eher beschränkte des allgemeinen Diskriminierungsverbot zu erwarten. Dies ergibt sich bereits aus rein ökonomischen Überlegungen. Eine Preisdiskriminierung bzw. eine einzelne Abnehmer diskriminierende Entgeltstruktur ist aus Sicht eines Monopolisten ökonomisch sinnvoll um unterschiedliche Preiselastizitäten der Abnehmer optimal ausnutzen zu können.

**Key Words** : Energierecht, Intelligente Grid, Energieeffizienz, Energieversorgung, Entgeltstruktur der Elektrizität

